"청렴은 당연하게! 전북교육은 당당하게!"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수신 학원연합회김제시지회장

(경유)

제목 [안내] 2021년 학원.교습소 의무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실시 협조 요청

---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14(2021. 6. 18.), 미래인재과-17804(2021. 8. 20.)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48(2021. 6. 4.), 미래인재과-17777(2021. 8. 19.)

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53(2021. 7. 7.), 미래인재과-17743(2021. 8. 19.)

2. 2021년 학원·교습소 의무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긴급복지 신고의무자,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교습소의 장이 신고의무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전원이 교육대상자임

나. 교육 이수기간: 2021. 1. 1. ~ 2021. 12. 31.

※ 인터넷 강의는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유의

다.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터넷 강의 권장

라. 교육 결과제출: 2022. 1. 31.까지 각 교육과정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교육지원청 담당자 이메일: mayohsk@jbedu.kr 또는 팩스: 063-540-2599 로 제출

마. 교육과정별 안내사항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가)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나)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다)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gseek.kr),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main.do)에서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

(집합교육 시 민간 콘텐츠를 이용한 교육 이수 불인정, 보건복지부 제작 또는 승인한 콘텐츠 인정)

라) 결과제출: [붙임2]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교육방법 별 증빙자료 요건이 강화되었으니 결과보고서 <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 확인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가)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4항

나)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다)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http://in.kohi.or.kr/index.do)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교육과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교육동영상 활용(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긴급복지' 검색)

라) 결과제출: [붙임4]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가) 근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의6

나) 내용: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실시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http://in.kohi.or.kr/index.do)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www.naapd.or.kr) 정보 - 발간자료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등 활용

라) 결과제출: 2021년 말 결과제출 양식 등 별도 통보(예정)

3.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니 교육 이수기간 내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학원 및 교습소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양식) 1부.
3.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양식) 1부.
5.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오수경	평생건강담당	이윤재	교육지원과장	전결 2021.09.01. 이윤록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16417 (2021. 9. 1.) 접수 ( )

우 54380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북로 70(요촌동)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 http://www.jbgje.go.kr

전화 063-540-2583 /전송 063-5402599 /mayohsk@jbedu.kr /비공개(7)

"꿈을 꾸고 도전하는 학교, 함께하는 김제교육"